

동두천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-230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시 : 2012. 10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동두천시 체육시설 사용료를 관외거주자에게 일괄 50% 가산하여 부과하던 것을 연천군과의 상생협약에 따라 연천군민에게 동두천 시민과 동등한 사용료를 적용하고, 현실에 맞지 않는 입장권 발매 조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인라인스케이드장과 육상장의 입장권 발매 조항 삭제(안 제11조)
- 연천군민에게 동두천 시민과 동등한 사용료 적용(안 별표1등)
-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(안 별지3등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1부터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신청인란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.

소관실과		시설사업소
입 안	실·과장 직위·성명	시설사업소장 김재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운동장팀장 임태만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주무관 김태우 860-3301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사용자 ① 제2조의 “전용사용자”와 “사용자”는 지정한 일시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전용사용자와 이용료의 납부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. <u>다만,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육상장의 이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식에 의한 입장권을 판매함으로써 이를 징수한다.</u></p>	<p>제11조(사용자) ①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삭 제></p>